

무투표통지

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에 있어서 (○○선거구)·(○○국회의원
지역구)는 후보자수가 (1인이므로)·(의원정수와 같으므로)·(의원정수에 미달
되므로)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[인]

주

1. 이 서식은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에게 무투표통지를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
2. 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)·(비례대표시·도의원선거)·(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
선거)에 있어서는 "년 월 일 실시하는 (비례대표국국회의원선거)·
(비례대표○○시·도의원선거)·(비례대표○○구·시·군의원선거)에 있어서는 (○
○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만 있으므로)[모든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수가 (비례
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의석정수)·(비례대표○○시·도의원의석정수)·(비례대
표○○구·시·군의원의석정수)]이내이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
통지합니다."라고 기재한다.

[별지 제59호서식의(나)] <개정 2005.8.4>

무투표실시안내

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(○○선거구)에 있어 후보자 ○○○가
(사퇴)·(사망)·(등록무효)하여(되어) 후보자수가 (1인이므로)·(의원정수와 같
으므로)·(의원정수에 미달되므로)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
립니다.

년 월 일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[인]

주 : 이 안내문은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를 실시
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한다.